

동대구 동화아이위시

[신혼부부 특별공급] 당첨자(예비자포함) 제출서류 리스트

■ 기본 서류

※ 모든 계약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(2020.07.02) 이후 발행분에 한함

서류유형 필수	해당	해당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모든 사항 표시 (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및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, 세대 구성일 및 사유, 발생일 등)
○		주민등록표초본		모든 사항 표시 (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/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 (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) /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)
○		인감증명서 / 인감도장		용도: 주택공급신청용
○		신분증		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
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	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※ 발급기간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
	○	가족관계증명서		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
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
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가 확인 서류

서류유형 필수	해당	해당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혼인신고일 확인
○	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세대원	만19세이상 세대구성원 전원 제출
○		소득증빙서류 (※아래 표 참조)	세대원	만19세이상 세대구성원 전원 제출 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증빙서류 추가)
	○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
	○	기본증명서	자녀	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
	○	임신증명서류,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) 제출 (※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)
	○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입양의 경우

■ 무주택여부 소명 서류

-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소명자료 제출 (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 관련)

해당서류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건물 등기부등본	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(가옥대장등본 포함)
무허가 건물 확인서	철거 예정 증명서 등
소형·저가 주택 확인서류	주택 공시가격 증명원 등
기타무주택 확인서류	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기타서류	사업주체가 요청하여 인정하는 서류

■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

- 서류제출 대리인은 가족에 한함 (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)

- 제출처 - 견본주택내 상담석 (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56-1번지)
문의 - 053- 752-3355

★ 유의사항

- ①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[2020.07.02]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.
- ② 성명, 주민등록번호 (뒷 7자리포함), 세대주 성명, 관계 및 주소이력 이 모두 표기된 발급 분에 한합니다.
- ③ 위의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[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]

해당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, 휴직기간 명시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(원본, 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(원본) - 전년도 휴직기간 이 있는 경우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, 매월 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)	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/ 해당직장
	신규취업자 /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)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 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	①, ②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(원본, 직인날인)	①, ②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직장가입자만 해당 -학원강사, 보육교사 등-)	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	①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 사업자등록증(사본)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	①, ②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(사본) ※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(원본) 제출	① 세무서
	신규사업자	① 사업자등록증(사본) ②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	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
	법인사업자	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사업자등록증 ③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	① 등기소 ②, ③ 세무서
	보험모집인 /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원본)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 및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	①, ② 세무서 ③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수급자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① 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-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	① 해당직장, 국민연금관리공단	
무직자 (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)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-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일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등 증명서류 추가 제출	① 견본주택 비치	

※ 서류 확인 필수, 미비서류 접수시 접수 불가하며, 구비서류는 **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07.02)이후 발행분에 한함**